

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의결주문

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- 2020. 10. 29. 사법행정자문회의 제9차 회의 결정에 따라 직무성과금 지급대상을 16호봉 이상 일반법관에 확대함
- 직무성과금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구체화하고, 법관에 대한 직무성과금의 지급에 있어서 다양한 평가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직무성과금 직무등급의 지급인원과 지급액의 조정 가능 범위의 한도를 25%에서 30%로 높이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직무성과금 지급대상을 원로법관 및 15호봉 이하 법관에서 「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」 별표 1의 일반법관으로 확대함(안 제11조의8제1항)
- 직무성과금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구체화하여 직무성과금 심의위원회가 지급제외자의 범위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의8제2항)

- 법관의 직무성과금 직무등급의 지급인원과 지급액의 변경한도를 30%로 조정(안 제11조의8제4항 단서)

4.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붙임과 같음

5. 신·구조문대비표
붙임과 같음

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8제1항 중 “법관인사규칙 제11조의3제1항에 의하여 지명된 법관 및 15호봉 이하 법관에 대하여는”을 “「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」 별표 1의 일반법관에게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지급액”을 “지급제외자, 지급액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“25%”를 “30%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직무성과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의8제1항,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직무성과금 지급대상을 확정하는 날인 2021년 6월 30일 기준으로 지급대상인 법관에게 10월 중에 지급하는 두 번째 직무성과금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의8(직무성과금) ① <u>법관인사규칙 제11조의3제1항에 의하여</u> 지명된 법관 및 15호봉 이하 법관에 대하여는 직무의 내용·곤란도 및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성과금을 지급한다.</p> <p>② 직무성과금의 직무등급, 지급인원, <u>지급액</u>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‘직무성과금 심의위원회’(다음부터 ‘위원회’라고 한다)를 둔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직무성과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2회 지급하며, 별표 6의3에서 정한 지급기준액을 기초로 별표 6의4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한다. 다만, 법원행정처장은 각 직무등급에서 정한 지급인원 및 지급액의 각 <u>25%</u>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.</p> <p>⑤ (생략)</p>	<p>제11조의8(직무성과금) ① 「<u>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</u>」 별표 1의 일반법관에게는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 <u>지급제외자, 지급액</u> ----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동일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30%</u>----- ----- --.</p> <p>⑤ (현행과 동일)</p>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실	
연락처	(02) 3480 - 1932